

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6. 28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 :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6. 28. ~ 2021. 7. 1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정남(Tel. 02-580-49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6. 28. ~ 2021. 7. 12.)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장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주식회사 서초씨알오 박O철	176-81- 00529-0	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	6,344,440원	6,344,44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폐문부재 (2회)	1차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2 서호빌딩 **2호 2차 서울 서초구 동광로47 10-6 화천빌딩 **2호